



2016. 3. 4.(금)

시·군 청소년활동 거점기관 시범 운영기관 모집 공고



| 재 단 법 인 |

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
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

시·군 청소년활동 거점기관 시범 운영기관 모집 공고

□ “청소년활동 거점기관” 이란?

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청소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소년활동을 지원·수행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청소년활동 중추기관

□ 추진배경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1항에 의거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시·군·구 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·군·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설치·운영되고 있지 않음

제7조(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) ①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국가청소년정책의 통일된 전달체계 부재로 인해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, 지역 청소년 인증제도 지원 등 지역청소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 초래

○ 현실적으로 시·군·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의 어려움으로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별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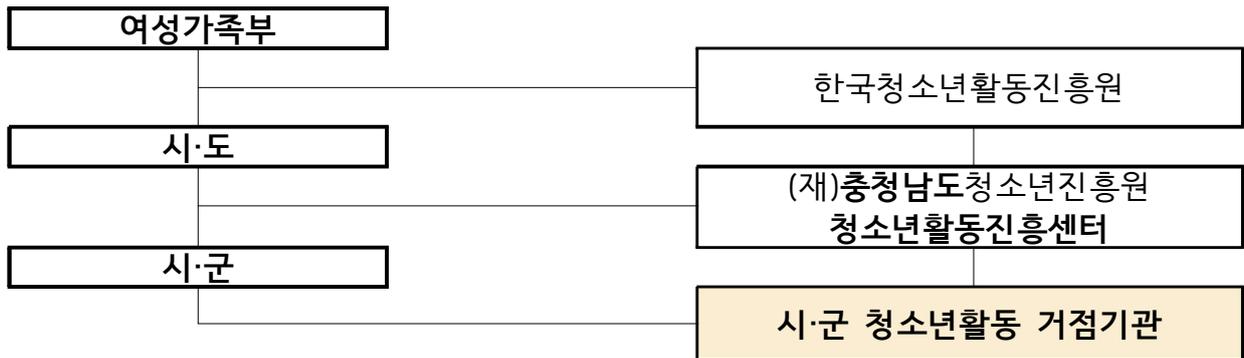
1 목 적

- 지역 청소년활동 증추기관으로서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청소년활동 협력체계 구축
-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
-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과제 사업 활성화

2 추진방향

- 시·군당 1개 희망 기관¹⁾ 지원
- 거점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및 컨설팅 지원
- 거점기관으로서의 안정적 발전 체계 확보

3 추진체계도



4 사업개요

- 사업명: 시·군 청소년활동 거점기관 시범 운영
- 사업기간: 2016. 3. ~ 11.
- 지원규모: 총28,000천원(7개 지역 기관당 4,000천원)
- 지원대상: 도내 청소년수련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유스호스텔)
- 주최·주관 : (재)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

1)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의해 설치·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

5

추진일정(안)

구 분	일 정	비고
○ 거점기관 시범 운영기관 모집	3. 4.(금) ~ 3. 15.(화)	-
○ 거점기관 시범 운영기관 선정 및 발표	3. 18.(금)	7개 기관
○ 업무협약 및 담당자 회의	3. 25.(금)	본원
○ 거점기관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지급	3. 22.(월) ~ 31.(목)	-
○ 거점기관 운영·지원	4. ~ 11.	기관별 컨설팅
○ 거점기관 평가회의	11. 23.(금)	시범 운영기관

※ 본원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6

거점기관 기능

- 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중심의 운영계획 수립
- 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수행

7

거점기관의 역할

- 공통
 -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(협의체) 구축, 운영
 - 지역 내 청소년활동 정보제공, 홍보
 - 청소년관계 기관 DB구축(학교, 관공서, 관련 유관기관 발굴 등)
- 선택(기관당 2개 이상 선택 운영)
 - 청소년봉사활동터전 1개소 이상 발굴, Dovol 봉사활동 프로그램 4개 이상 등록·운영
 -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1개 기관 발굴
 -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기관 1개 기관 발굴
 - 청소년수련활동신고·인증제 설명회 1회 이상 개최
 - 지역내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1개 이상 개발
 -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운영
 - 청소년동아리 신규 발굴 및 운영

8

거점기관 이행사항

- 업무협약 및 담당자 회의 참석: 3. 25.(금) / 본원
- 평가회의 참석: 11. 23.(목) / 본원
- 컨설팅 참여: 본원 제공 / 운영기관
- 반기 실적 보고
- 연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9

거점기관의 기대효과

- 청소년활동 정책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시·군 청소년활동 정책의 저변확대
- 지역내 청소년활동 중추기관으로서의 입지 공고화
- 지역중심 생활 밀착형 청소년활동 정책 추진
- 지역사회 청소년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활동 활성화

10

본원 지원사항

- 사업비 지원(지출 가능항목: 보조인력비, 네트워크 운영 회의비 등)
- 거점기관 홍보(사업 등 안내, 현판제공 및 홍보물 지원)
- 업무협약 및 컨설팅 지원

11

거점기관 선정 기준

- 시·군당 1개 희망 기관 7개 기관 지원: 지역별 협의를 통해 시군당 1개 기관만 지원가능 하며 별도의 심사는 없음(※ 1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기관은 지원하지 않음)

1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※ 시·군 청소년활동 시범 운영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본원 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(<http://cnyouth.or.kr>) 알림마당 -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
- ※ 서류는 본원 활동진흥센터 메일(cnbongsai@daum.net)로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스캔본으로 제출
- 제출서류
 - 청소년활동 시범 운영기관 신청서 1부[별첨1]
 - 청소년활동 시범 운영 사업계획서 1부[별첨2]
- 접수기간: 2016. 3. 4.(금) ~ 3. 15.(화) 14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cnbongsai@daum.net)
 - ※ 메일 제목에: ○○시·군 청소년활동 거점기관 신청
- 문 의: ☎ 070-5012-7772
 - ※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접수 여부 미확인 및 발송 오류로 인한 상황의 귀책사유는 신청기관에게 있음.

13 작성시 유의사항

- 선정 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
- 우수프로그램 선정 시 프로그램의 모든 저작권은 본원 활동진흥센터로 귀속
- 우수프로그램은 관계자회의, 현장 컨설팅을 통한 수정·보완과정을 거쳐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매뉴얼로 제작·배포
- 본원 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
- 페이지 작성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기본 양식 임의로 변경 불가
- 사업비 지출 가능 내역 및 예시표

지출 가능항목	내역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 강사수당 및 보조인력 인건비 (교통비, 원고료 포함 외부 강사에게 지출되는 모든 경비 포함) ※ 내부 기준에 근거 제시

여비	○ 운영기관의 담당자가 사업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역내 출장시 지급 '공무원 여비 규정'제18조 의거 지급
임차비	○ 장비 및 시설 대관비(차량 임차 포함)
회의비	○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식음료 및 외부 인력의 회의 참가 수당
프로그램 진행비	○ 활동 진행 중 사용되는 물품(재료비)과 경비
숙식비	○ 숙박비, 식비 ※ 1인 1식 7,000원 이하 ※ 내부직원이 참가자 전체 50%이상인 행사의 식비 지출 불가
다과비	○ 활동 진행 중 사용되는 간식 ※ 1인 1회기당 3,000원 이하
홍보비	○ 포스터, 리플렛, 활동보고서등 인쇄책자, 현수막 제작 등
운영물품비	○ 활동에 필요한 예비비 및 운영물품비
보험료	청소년활동 관련 안전보험(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)

※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

□ 사용 불가능 내역 :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용불가 하며, 기관 자부담 처리(아래 항목 중 자부담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)

불가능 지출항목	내역
자본적 경비	○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신전화, 전산장비 등
기관 운영경비	○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○ 차량유지 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시상금	○ 시상금 및 시상품에 해당하는(문화상품권) 현금성은 지출 불가
내부직원 수당	○ 내부 직원의 회의 참석 수당 ○ 기존 직원의 추가 업무 수당
이체 수수료	○ 계좌 입금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